

제 276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운영위원회(2024.3.4.)

조례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최영미]

목 차

1	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	1
---	-----------------	---

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. 2. 20.

나. 발 의 자: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(11명)

(이재운, 이홍희, 박수자, 김홍섭, 표주숙, 신재화,
신중양, 김향란, 최준규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20.

2. 제안이유

- 거창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2조)

나. 의장 등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입법평가 대상, 기준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6조)

라. 입법평가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9조)

마.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, 용역,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3. 12. 22. ~ 12. 27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제정의 필요성 : 필요

- 실효성이 없거나 시효가 지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.

○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: 해당없음

- 지방자치법 제13조, 제28조

○ 재정부담 여부(예산조치사항) : 필요시 확보

- 조례안 제11조(용역)에 따라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시 예산 확보가 필요함.

○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: 해당없음

- 427건의 거창군 현행 조례에 대한 3년마다 입법평가 실시계획 수립과 입법 목적의 실현성·실효성 등 내실있는 입법평가 결과 도출 및 개선조치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임

○ 조문 내용의 적합 여부 : 적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작성하였으며, 의장의 책무, 입법평가 대상과 기준,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해 적절하게 구성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「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」은 실효성이 없거나 시효가 지난 조례를 정비(개정 또는 폐지)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2024. 2. 22. 현재 거창군에서 제정된 조례는 427건이며, 제정 후 10년 이상 개정이 없는 조례는 36건임.
-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자칫 의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으나, 이미 제정된 조례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·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
- 매년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부족, 실질적인 규범력 미흡 등 안정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화된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.
-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34년째를 맞이하면서 자치 입법 분야가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,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입법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.

- 또한, 조례 제·개정 과정에서의 숙의 및 입법이후의 영향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입법평가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으리라 봄.

참고1 **관련 법규**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참고2 **타 지자체 관련(유사) 조례 제정 현황**

자 치 단 체		법 규 명	공 포 일 자	비 고
경남	도	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	2023. 2. 2.	제정
	거제시	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	2023.11.23.	제정
	사천시	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	2023. 4. 27.	개정